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
----------	----

제안년월일 : 2006. 9. 8.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2006년 4월 28일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일수 제한 조항이 폐지되고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실정에 맞는 연간 회의총일수 및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 계획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 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월, 2월 중에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다.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매 회기는 30일 이내에서 개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 중에 집회하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마. 정례회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
- 바. 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개최하고,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조례안(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월·2월 중에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매 회기는 30일 이내에서 개최한다.

②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하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의회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최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개최한다.

②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제6조(준용 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